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검 · 분사기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 강화 등〉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3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09. 11.
3. 회 부 일 : 2024. 0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 수준이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하여 제조업허가(제4조 제2항·제3항)·판매업허가(제6조제1항·제2항)·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제6조의2제1항·제2항)·수출입허가(제9조제2항)·소지허가(제12조 제1항·제2항·제3항)등 위반행위(이하 ‘무허가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등에 대하여도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제70조의3)이 적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70조의2(벌칙)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② (생 략)

제70조의3(상습범)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
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
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만 해당한다)·제2항(도검·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
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

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분
사기·전자충격기만 해당한
다)·제3항(도검·분사기·전
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을 위반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의3(상습범) 상습적으로---

-----.

제71조(벌칙) -----

-----.

<삭 제>

<u>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u> 1의2. ~ 8. (생략)	1의2. ~ 8. (현행과 같음)
---	--------------------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은 ①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이하 ‘권총 등’)에 관한 무허가 행위에 대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② 권총등을 제외한 총포 및 화약류에 관한 무허가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③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무허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면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총포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도검을 사용한 인명피해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검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상향하고 상습적인 무허가 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도검 관련 인명피해 사건 >

- ▶ 24. 9월 서울 서대문, 형제간 다툼 중 단검으로 옆구리 찔린 형이 단검 빼앗아 동생 손바닥 찌름
- ▶ 24. 8월 대구 달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집에 찾아가 재크나이프 휘둘러 손가락에 상해
- ▶ 24. 7월 서울 은평, 아파트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피해자를 일본도로 위협 후 경찰신고하는 사이 살해
- ▶ 23. 6월 경기 광주, 주차 관련 시비로 일본도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절단하여 살해

※자료: 경찰청

다만, 개정안은 도검·석궁과 함께 분사기·전자충격기에 대한 무허가 행위의 법정형을 일괄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그런데 분사기·전자충격기의 경우 주로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위협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데 반하여 도검과 석궁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도검·석궁과 분사기·전자충격기에 대한 무허가 행위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5